

2003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우리 파주시는 높은 인구증가율 및 급증하는 노인인구수를 고려할 때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당면한 과제이며 21세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심각한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로 동 건물을 건립하여 파주시 복지수준의 질을 한단계 성숙시키고자 하며,
- 매년 도서관이용자의 증가 및 각종 택지개발등으로 인한 유입인구의 증가 그리고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대응하여 지역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 등 시민의 지적욕구 충족 및 문화향유의 정보센터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자 파주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함.

□ 주요골자

취득의 재산명	위 치	면적 (m ²)	금 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회관	금촌제2택지개발지구내 (파주시 금능동 산35)	3,966.96m ² (약1,200평)	6,176,000	신규 건축
시립도서관	금촌제2택지개발지구내 (파주시 금능동 산89-5)	5,940m ² (약1,797평)	7,264,000	신규 건축
계		9,906.96	13,440,000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파주시 금능동 일원에서 사업이 추진 중인 금촌 제2택지개발지구내 공공부지 2개소에 2003년도 신축 예정인 노인복지회관과 시립도서관을 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 2003년도 동 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사전에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7조제1항 규정 등에 의거 작성·제출 되었음으로 법령적합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地方財政法施行令》 [일부개정 2001.9.15 대통령령 제17363호]

제84조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地方自治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69호]

第35條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改正 1994·3·16, 1999.8.31>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처분

《坡州市公有財產管理條例》 [2001. 10.10 조례 제410호]

제35조(公有財產 管理計劃) ①법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나. 내용 적합성

-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파주시가 대형 택지개발사업 시행과 지역개발로 인해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노령인구 또한 급증하는 실정으로 이러한 인구증가 추세에 맞추어 노인복지차원의 종합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아울러 외부 도시인구의 유입에 따른 지적육구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 및 지역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현대적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데 따르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으로서
- 안건의 취득계획안을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금능동 산 35번지에 위치한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약1,200평의 규모로 신축되며 취득 추정가액은 총6,176백만원이고, 시립도서관은 금능동 산 89-5번지 공원부지내에 위치한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약 1,797평에 열람석 1,500석 규모로 건립되며 취득 추정가액은 7,264백만원으로 모두 2건에 13,440백만원의 건물재산을 취득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음.
- 특히, 건축물부지는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인 근린공원부지를 이미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고, 시립도서관 건립시설비도 금년예산에 1,498,600천원이 반영되어 있어, 2003년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데는 특별한 제약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